

사회적 거리두기  
2.5단계 + 방역강화  
(12.15. ~ 12.28.)

English

GO



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| **코로나19**






코로나19 현황	사회적 거리두기	지원정책	코로나19 알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확진자 이동경로</li> <li>확진자 현황</li> <li>주요집단사례</li> <li>확진자 추세</li> <li>부산시 상황보고</li> <li>일자별 현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 거리두기</li> <li>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</li> <li>마스크 착용 의무화</li> <li>마스크 사용 캠페인</li> <li>예방행동수칙</li> <li>자가격리자 행동수칙</li> <li>가족/동거인 행동수칙</li> <li>코로나19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합안내</li> <li>기업지원시책</li> <li>정부지원</li> <li>인터넷 방역단</li> <li>클린존 (방역안심시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지사항</li> <li>코로나19 Q&amp;A</li> <li>마스크 의무화 Q&amp;A</li> <li>선별진료소</li> <li>부산 국민안심병원</li> <li>부산 호흡기전담클리닉</li> <li>코로나19 심리지원</li> <li>홍보(서식) 다운로드</li> </ul>

12월 18일 (Fri) 10시 발표



지역	중구	서구	동구	영도구	부산진구
금일	-	-	-	-	-
누적	16	43	55	13	182
동래구	남구	북구	해운대구	사하구	금정구
-	-	-	-	-	-
134	90	119	143	81	54
강서구	연제구	수영구	사상구	기장군	기타
-	-	-	-	-	-

강서구	연제구	수영구	사상구	기장군	기타
35	65	51	135	28	171

- 13시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. 
-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관련 브리핑(\*20.12.14.) 
- 코로나19 전국 현황 자세히 보기 

## 사회적 거리두기

###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+ 방역강화 (12.15. ~ 12.28.)



구분	(원칙) 2.5단계 + (추가) 일부 방역수칙 강화	
	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	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	▲ 집합금지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▲ 집합금지
	노래연습장	▲ 집합금지
	실내 스탠딩 공연장	▲ 집합금지

중점관리시설 (9종) 구분	(원칙) 2.5단계 + (추가) 일부 방역수칙 강화	
	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(식당)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li>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</li> <li>-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응 음식류*를 판매하나, 운영 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,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</li> <li>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</li> </ul> </li> <li>■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: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 등</li> <li>■ (50㎡이상 추가 의무사항)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</li> <li>▲ (카페)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li>■ (프랜차이즈형 카페)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, 음료[커피 외] 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</li> </ul> </li> <li>■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</li> <li>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</li> <li>▲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준수</li> <li>■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</li> <li>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li> <li>■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</li> </ul>
일반관리시설 (16종) * 음식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·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	(공동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(300㎡ 이상 상점·마트·백화점 제외)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	실내체육시설	▲ 집합금지
	결혼식장 / 장례식장	▲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	목욕장업	▲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사우나·한증막 시설(발한실) 운영 금지
	영화관	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좌석 한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
	공연장	▲ 좌석 두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
	PC방	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미성년자 출입금지 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	오락실·멀티방 등	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	학원(독서실 제외)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	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관악기·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* 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, 다만 '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

구분	(원칙) 2.5단계 + (추가) 일부 방역수칙 강화	
	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▲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</li> <li>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</li> </ul>
	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▲ 수용가능인원의 1/3 인원 제한</li> </ul>
	아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/ul>
	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/ul>
	편의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</li> <li>■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</li> </ul> </li> </ul>
	포장마차(음식조리·판매시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</li> </ul>
기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 등)</li> </ul>	
국공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% 제한 유지</li> </ul>	
사회복지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</li> </ul>	
마스크 착용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</li> <li>*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·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</li> </ul>	
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5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</li> <li>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</li> <li>▲ 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</li> </ul>	
스포츠 관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무관중 경기</li> </ul>	
교통시설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</li> <li>▲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</li> <li>▲ KTX·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</li> </ul>	
등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밀집도 1/3 준수</li> </ul>	
종교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·시일식 등 원칙(부득이한 경우 20명 이내)</li> <li>▲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</li> </ul>	
기타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(커뮤니티센터 등) 운영 중단</li> <li>▲ 호텔·파티룸·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·연시 행사·파티 등 금지 (적용대상) 공중위생관리법상 등록 숙박업,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,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시설 (객실) 1객실당 5명 초과 이용 금지(펜션, 콘도의 경우 1호실당 최대 5명) (이용자) 숙박시설에서 행사·파티 금지</li> </ul>	
각종 동호회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탁구·배드민턴·축구·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·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</li> <li>▲ 댄스동호회,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</li> </ul>	

구분	(원칙) 2.5단계 + (추가) 일부 방역수칙 강화
직장근무	<p>▲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사차운영 등 적극 활용</p> <p>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p> <p>▲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/p> <p>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</p>
행정명령	<p>▲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~별도 해제시 까지</p> <p>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</p> <p>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505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2.14</p> <p>▲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506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) : 2020.12.14</p>
위 반 시	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6편] 부산 BMW 믿어도 되나??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5편] 힘내세요 만덕씨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4편] 역학조사관의 오해와 진실! 부산시 역학조사반은 어떤 일을 할까?

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3편] 뭐? 이거벗으면 과태료 부과?! 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2편] 동선 숨기고 자가격리 거부? 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



[코로나 뭐든 알리줌 1편] 열나고 기침도 난다! 나도 혹시 똑같? 코로나?